

중국 취업촉진법 초안의 주요내용

1. 개요

□ 2007년 2월 26일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(常務)위원회 26차 회의에서 “취업촉진법초안”¹⁾이 상정됨.

- 동 초안은 총칙, 정책지원, 시장질서의 규범화, 직업교육 및 훈련, 취업서비스 및 취업원조, 감독 및 감찰, 법률적 책임, 부칙 등 총 8장 64조로 구성됨.

□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무처는 3월25일 “취업촉진법”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1개월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.

- 4월 4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모두 4,713건으로 그 중 대다수가 취업촉진법 제정에 찬성하며, 동 법이 민심에 부합하고 시의적절한 법이라고 평가함.

- 또한 고용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규정, 초안의 2장인 ‘정책지원’ 내용의 구체화, 창업자에 대한 지원강화, 인재 및 노동력 시장의 통일과 대학생 취업문제 등에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룸.

1) "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(草案)"에 관한 전문은 '전국인민대표대회' 홈페이지(<http://www.npc.gov.cn>) 참조.

2. 취업촉진법 초안의 주요내용

가. 취업촉진의 원칙, 업무 메커니즘 명시

- 취업확대를 경제사회발전의 중요문제로 인식하고 경제발전과 취업확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견지하여 사회의 조화안정을 실현함(제 1조).
- 국가는 적극적으로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, 시장을 통한 취업조절, 정부의 취업촉진 방침을 견지하여 취업목표를 실현함(제 2조).
- 현급 이상 정부는 취업확대를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조정의 중요 목표로 삼고 취업촉진의 중장기 계획과 연도업무계획을 제정함(제 3조).
- 국무원은 취업촉진업무를 전국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할 메커니즘을 건립하고, 국무원 노동보장부 문이 전국의 취업촉진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짐(제 7조).
- 성, 자치구, 직할시 정부는 취업촉진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취업업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함.

나.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

- 국가는 취업촉진에 유리한 산업정책, 경제무역정책, 투자정책, 재정 및 세수정책, 대출정책 등을 실시함.
- 노동집약형산업, 서비스업, 비공유제경제 및 중소기업을 발전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 창출을 장려함(제 12조).
- 현급 이상 정부는 취업상황과 취업업무 목표에 따라 재정예산 중 적정자금을 취업촉진업무에 사 용함(제 15조).

- 국가는 취업촉진에 유리한 세수정책을 시행하고 기업의 일자리창출, 노동자의 자유창업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려함(제 17조).
- 국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유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 소액대출 등을 지원하게 하여 취업확대를 도모함(제18조).
- 국가는 도시와 농촌 및 각 지역을 통괄하는 취업정책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도시와 농촌노동자에 대해 평등한 취업제도를 수립하고,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취업과 지역 간 노동자 교류 등을 장려함(제 19조, 제 20조).
- 국가는 실업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실업자의 기초생활을 법으로 보장하며 재취업을 촉진함(제 16조).

다. 노동시장 질서의 규범화

- 용역업체나 직업중개기구는 민족, 종족, 성별, 종교, 연령,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,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지역 취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금지함(제 26조, 제 27조).
- 외상투자 직업중개기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(제 31조).
- 외자 직업중개기구는 2003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‘중외합자인재중개기구관리규정(中外合资人才中介机构管理暂行规定)’에 의거하여 등록자본금은 30만 달러 이상이고, 중국측이 다수지분을 보유한 중외합자기업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함.
- 현금 이상 정부와 관련부문은 직업중개기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직업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직업중개기구 설립의 조건, 절차 및 중개활동의 원칙에 대해 규정함(제 28조~제 32조).
- 직업중개기구의 설립 절차는 노동보장부문 또는 인사부문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접수 30일 이내에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직업중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함(제 30조).

- 기업의 대규모 감원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, 현급 이상 정부는 실업사전경고제도를 수립하여 대규모 실업을 예방·조절함(제 33조, 제 34조).
- 국가는 노동력조사 통계제도와 취업·실업등기 통계제도를 완비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인재 및 노동시장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(제 25조, 제 35조).

라. 직업교육과 훈련

- 국가는 법에 근거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장려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제정·실시하여 노동자에 대한 직업기술훈련을 강화함(제 36조, 제 37조, 제 39조).
 - 현급 이상 정부는 각종 직업학교와 기술훈련기구가 법에 근거해 취업 전 훈련, 재직 중 기술훈련 및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함(제 38조).
 - 각급 정부는 도시에 취업한 농촌노동자가 기술훈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, 각종 훈련기구의 기술훈련을 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함(제 42조).
 - 국가는 노동자 취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하고, 규정한 직업에 대해 직업자격 증서제도를 시행함(제 43조).
-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함.

마. 취업서비스와 취업원조

- 현급 이상 정부는 공공 취업서비스제도를 완비하고 공공 취업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며, 정부가 설립한 공공 취업서비스 기구는 노동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(제 46조).
- 무료 공공 취업서비스에는 정책법규 자문, 직업수급 정보, 직업훈련정보 서비스, 직업지도와 직업 소개 서비스, 취업곤란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됨.

□ 각급 정부는 취업·재취업 지원제도를 수립하고, 취업곤란자에게 정부가 투자개발한 공익성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등 중점지원을 함(제 49조, 제 50조).

- 취업곤란자의 범위는 성, 자치구, 직할시 정부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함.

□ 자원고갈이나 경제구조조정으로 취업이 어려운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상급 정부가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함(제 53조).

바. 감독감찰 및 법률책임

□ 각급 정부와 관련부문은 취업촉진 목표책임제도를 수립하고 현급 이상 정부는 취업촉진 목표책임제도가 제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관련부문을 심사, 감독함(제 54조).

- 상급 정부는 취업목표책임제에 의해 하위급 정부를 심사, 감독함.

□ 직업중개기구의 위법행위(무허가 영업,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직업중개활동 추진 등)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처벌하고,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1만 위안 이상,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(제 60조).

3. 관련 논의

□ 현재 국무원은 취업촉진 업무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, 국무원 노동보장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전국의 취업업무를 책임지고 있음.

-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현재의 취업촉진 업무 관련 부처간 상호연계시스템과는 다른 상설 기구로서 취업촉진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□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법학원의 황용(黄勇), 종쩐쩐(钟真真) 교수는 취업촉진법 초안에 대해 다

음과 같이 미흡한 점을 지적

- 동 초안의 내용은 고용촉진업무의 재정투입 확대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함.
- 기업이 규정에 따라 특정인력(신체장애인 등)을 고용하는 것과 경제활동인구가 한 명도 없는 가계구성원의 취업을 배려하는 것 등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.
- 대졸자들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취업하도록 권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.
- 중소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은 고용기회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 법률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항을 규정해야 함.

<참고자료>

《中国经济时报》, “新闻分析: 就业促进法将给百姓带来什么?”, 2007.3.25

《中国发展观察》, “完善就业促进法律制度 发展和谐劳动关系”, 2007.3.12

《中国发展观察》, “促进就业政府义不容辞 政策要向弱势群体倾斜”, 2007.3.10

《中国经济时报》, “就业促进法草案首次提请审议 建立政策支持体系”, 2007.2.27

《新京报》, “就业促进法草案首次审议 县级以上政府应设失业预警”, 2007.2.27

《21世纪经济报道》, “劳动力供求缺口1000万 就业促进委员会有望成立”, 2007.2.28

中国人大网: <http://www.npc.gov.cn/zgrdw/home/index.jsp>